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자격증 교부일을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, 민간이송업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, 응급의료시설의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하여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3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●국토교통부령 제176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(求償)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, 재물의 멸실(滅失) 또는 훼손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

●해양수산부령 제134호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월 8일

해양수산부장관 인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.